

의안 번호	2249	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발의일자 : 2024. 5. 2.(목)
- 발의자 : 박경흠 의원 외 5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5. 2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5. 13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(박경흠 의원)

-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되도록 담당부서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, 건의안 및 결의안의 내용을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사후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회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적극 전달되도록 담당부서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내용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시켜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조례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
 2. 예산의 심의 · 확정
 3. 결산의 승인
 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· 수수료 · 분담금 ·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 5. 기금의 설치 · 운용
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· 처분
 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· 처분
 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 9. 청원의 수리와 처리
 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· 협력
 11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